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부과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이 세 진)